

#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경만선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2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21일

발 의 자 : 경만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임종국, 이성배, 김화숙,  
이상훈, 김태호, 문병훈,  
박기재, 이광호, 송아량,  
신정호 의원(10명)

## 1. 제안 이유

- 최근 도시철도 선로에 무단 침입하여 열차 운행을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열차 운행 방해를 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임.
- 이러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」 시민의 의무에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안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  
신설 (안 제4조제3항)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철도안전법」
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 ①·② (생   략)  <u>&lt;신   설&gt;</u>	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<u>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 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 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정해진 안전수칙 을 따라야 한다.</u>